

[별지 제2호서식] (규칙 제4조제6항 관련) <개정 2025. 6. 20.>

인 영 신 고 서

단 체 명	대 표 자 명	대 표 자 의 인 영

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각종 신고·제출시에 사용할
인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신고인

〇〇단체 대표자	〇	〇	〇	인
대 표 자	〇	〇	〇	인

〇〇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주 : 제4조(찬성·반대운동 대표단체)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가 신고하는 때에는
"단체명"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.